

의안번호	제 180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6월 일 (제 340 회)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5년 6월 1일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0
----------	-----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년 6월 1일

발 의 자 : 이광희,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숙애, 이종욱,
장선배의원(7인).

1. 제정이유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노력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장과의 협력체제구축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해마다 정기 및 수시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사전검사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검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규정함(안 제7조)
- 바.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원자력 안전법」, 「초·중등교육법」

나. 관계부서협약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와 협약완료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입법예고

1) 기 간 : 2015. 5. 11. ~ 2015. 5. 31.(20일간)

2) 제출의견 : 입법예고 제출의견 첨부

마. 토론회 : 2015. 4. 2.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성물질,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방사능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해마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품목·시기·방법, 검사결과 조치, 방사능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지정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제4조를 심의하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각 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점검,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식재료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마다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검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감사의뢰가 있을 시, 이들의 의견이 검사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제1항의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결과 조치) 교육감은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급 학교 및 납품업체에 통보하여 유해물질 해당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 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15조(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 등 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식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나 위해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7.]

제90조의2(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5.21.>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 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 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비용 추계서

1. 비용추계내용

○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예산 추계

2. 비용추계

- 2015년 본예산에 세워져 총 50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4,5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매년 확대 예정)

구분 \ 연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방사능검사비	4,000천원	4,400천원	4,800천원	5,200천원	5,600천원
검체물품비	500천원 (50건)	550천원 (55건)	600천원 (60건)	650천원 (65건)	700천원 (70건)
합 계	4,500천원	4,950천원	5,400천원	5,850천원	6,300천원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기초자료 및 세부내역

- 2015년 수산물 방사능 검사(매년 확대 운영 예정) : 4,500천원
 - 방사능 검사비(검사기관 : 충북보건환경연구원)
50건 * 80,000원 = 4,000천원
 - 검체 물품비
50건 * 10,000원 = 500천원

4. 작성자 : 체육보건급식과 식품위생 6급 김영숙(290-2163)

입법예고 제출의견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제출기관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충북 학교급식운동본부

의견	의견반영
<p>제2조(용어의 정의)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능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p>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방사능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p>제4조(기본계획수립)에 다음에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교육청에 학교급식 방사성 물질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위원회는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등을 고려한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 물질 검사계획 등을 심의한다. 	<p>제4조(기본계획수립)제2항과 제3항에 일부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교육감은방사능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지정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③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성 물질 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하여 위원회에서 제4조(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로 수정함.

의견	의견반영
<p>제5조(식재료 검사)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단위 학교의 학부모나 구성원들의 검사의뢰가 있을 시 이를 즉시 검사에 반영하도록 한다.</p>	<p>제5조(식재료 검사)제1항에 반영</p> <p>『① 『교육감은 급식학교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마다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검사가 실시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검사 의뢰가 있을 시, 이들의 의견이 검사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로 수정함.</p>
<p>제6조(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결과 조치)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교육감은 식재료 검사결과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p>	<p>제6조(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결과 조치)에 반영</p> <p>『교육감은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급 학교 및 납품업체에 통보하여 유해물질 해당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함.</p>